「2021년 재·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」 결과

1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·반대의사 표명(8건)

1	**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**	**경징계**
ㅇㅇ ㅇㅇ구 평생학습과 ㅇㅇㅇ(운전6)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**◆◆◆ 후보 지지 게시글 239회, ◈◈◈ 후보 반대 게시글 194회, ◉◉◉ 후보 지지 게시글 25회, ▣▣▣ 후보 반대 게시글 99회**, 기타 **◎◎◎당 지지 게시글 14회, ▢▢▢ 반대 게시글 3회** 등 **총 574회** 선거관련 게시글을 공유		

2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경징계**
ㅇㅇ ◇◇◇◇◇본부 ㅇㅇㅇ(기계운영6)은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**◆◆◆**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 30회 클릭**, **'좋은 결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'** 등 **댓글 6회** 작성		

3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경징계**
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(행정6)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**◆◆◆**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 48회 클릭**, **"당당한 국민시대 열어주세요", "당당한 보수 대연합을 실천할 시기입니다"** 등 **댓글 5회** 작성 ※ 아울러 무소속 **◈◈◈** 의원, ▢▢▢ 소속 ◎◎◎·▣▣▣·◎◎·◉◉◉ 의원의 게시물에 지속·반복적으로 "좋아요" **58회 클릭**, "당당한 보수시대 홧팅" 댓글 1회 작성		

4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훈계**
ㅇㅇ ㅇㅇ시 시민고충담당관실 담당관 ㅇㅇㅇ(행정5)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◆◆◆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를 10회 클릭**		

5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훈계**
ㅇㅇ ㅇㅇㅇ 종합민원과 ㅇㅇㅇ(농업5)은 전남도의원(고흥제2선거구) 보궐선거 후보자 ◆◆◆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 16회 클릭, 이모티콘**(러브 등) **6회** 작성		

6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훈계**
ㅇㅇ ㅇㅇ군 ㅇㅇㅇ(공업6)은 전남도의원(고흥제2선거구) 보궐선거 후보자 ◆◆◆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, '하트' 8회 클릭, '응원합니다'** 등 **댓글 2회** 작성		

7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훈계**
ㅇㅇ ㅇㅇ시 건축과 ㅇㅇㅇ(임기제 마급)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◆◆◆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 17회 클릭**		

8	**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**	**훈계**
ㅇㅇ ㅇㅇ 시설지원과장 ㅇㅇㅇ(행정5)은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◆◆◆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**'좋아요' 13회 클릭**		

2 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(2건)

1	**구청장 명의로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**	**훈계**

ㅇㅇ ㅇ구 안전총괄과 ㅇㅇㅇ(행정5)외 1인은 '21.1.25.(월) **구청장 명의**로 **코로나19 방역활동 봉사자(2,400명) 및 관내 소상공인(6,400명)** 등에게 코로나 극복 **감사 서한문**과 **방역물품(마스크 3매씩)**을 **배부**하여 공직선거법(상시 기부행위 제한) 위반

※ (ㅇㅇ시 선관위) 구청장 **서면경고**, ㅇㅇㅇ **공직선거법 준수촉구 통보**('21.2.10.)

2	**군수 명의로 선물을 제공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**	**훈계**

ㅇㅇ ㅇㅇ군 비서실장 ㅇㅇㅇ(세무6급)은 '21.2.9.(화) 17:10분경 ㅇㅇ군수가 장흥읍 ㅇㅇ한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도중 **군수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김 선물세트**(쇼핑백 5개, 총 96천원)를 **한의원 직원 5명**에게 '**군수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***으로 **제공**

*한의원 직원은 선관위에 'ㅇㅇ군수가 주시는 것이라며 김을 주었다'고 진술 (ㅇㅇㅇ은 선관위 및 행안부 문답서 작성시 '군수명의를 밝혔다'는 것을 부인)

※ (ㅇㅇ군 선관위) ㅇㅇㅇ에게 공직선거법 제114조(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) 위반으로 '**서면경고**'('21.3.10.)

3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행위(4건)

1	**조직적으로 초과근무기록을 대리 입력**	**중징계**
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ㅇ(행정6), ㅇㅇㅇ(복지6) 등 총 12명은 '21.3.11 ~ 3.21까지 ㅇㅇ시장 보궐선거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(1,224천원)를 선거사무 기간 안에 전액 소진한다는 목적으로 **컴퓨터 전원만 켜 놓고 퇴근한 계장 및 직원들**의 **초과근무기록**을 **최종 퇴청자(1~2명)가 거짓으로 대리입력**		

2	**근무시간 중 음주로 사회적 물의 야기**	**중징계**
ㅇㅇ ㅇㅇ시 ㅇㅇ동장 ㅇㅇㅇ(행정5) 등 3명은 '21.3.10.(수) 통장 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사유로 **점심시간부터 22:00까지** 인근식당과 통장 회장의 자택에서 **4차**에 걸쳐 **음주**를 하면서 중간에 사무실 복귀가 어렵게 되자 17:00까지 출장을 상신하고 17:00까지 미복귀하여 복무규정을 위반		

3	**상습 허위출장으로 여비 부당수령**	**중징계 환수 가산징수**
ㅇㅇ ㅇㅇ시 징수과장 ㅇㅇㅇ(행정5)은 **'20.7~'21.3월까지 9개월간**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 방역활동 명목으로 **총 146회**에 걸쳐 **허위로 출장**을 신청하여 **여비 총 1,440천원 부당 수령**		

4	**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**	**중징계 환수 가산징수**
ㅇㅇ ㅇㅇ시 문화관광과 ㅇㅇㅇ(시설6)은 **'21년 1월부터 3월까지**('21.1.2. ~ 3.19.)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**총 31회**에 걸쳐 **출장비(480천원) 부당 수령** 동일 기간 주말에는 오전에 사무실에 들러 출근 지정을 하고서는 사찰, 유원지 등 외부에서 사적용무(2~3시간)로 시간을 보낸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퇴근 지정하는 방법으로 **총 14회**에 걸쳐 **초과근무수당(484천원) 부당 수령**		

④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(4건)

1	**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준공처리**	**경징계 수사의뢰**
ㅇㅇ ㅇㅇ구 스마트도시과 ㅇㅇㅇ(통신6)은 '◆◆◆◆ 구도심 스마트시민복지도시 구축사업(계약기간 '18.9.27.~12.20./ 250백만원)'에 대해 **계약내용의 일부가 완수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** * 스마트LED 무선센서등 500개, 몰카탐지기 150개의 설치유무에 대해서는 미확인, 리빙랩 관련 드론, DSLR카메라, 지미집 등의 납품 변경에 대해 구두협의 후 준공처리		

2	**행안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감경**	**경징계**
ㅇㅇ시 ㅇㅇㅇㅇ 폭행사건 관련 **행안부의 '징계처분'**을 받았으나, ㅇㅇ시 청렴감사관 ㅇㅇㅇ(시설6급), ㅇㅇㅇ(행정7급)은 **징계의결 요구권은 임용권자의 재량**이라고 **임의 판단***하여 상급자에게 **행안부 처분과 다르게** 관할 인사위원회에 **징계의결 요구가 가능**하다고 보고 ㅇㅇ시는 **관련 법령 등을 위반**하여 행안부의 처분요구와 다르게 **징계를 임의 감경 후** 관할 인사위원회에 **징계 의결을 요구**		

3	**공유지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 축조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**	**시정**
ㅇㅇ ㅇㅇ군 ㅇㅇ면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신기리 252-24번지 등 공유지상에 약 1억원을 투입, 초가집 등 7채를 임의로 건축하여 관광객 체험 쉼터로 조성,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마을부녀회와 특산물 판매장으로 대부 계약하던 중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2012년 6월 건축물의 자체 폐쇄 결정은 하였으나 미철거 이후 ㅇㅇ군은 현재(2021년 3월)까지 제대로 **활용하지도 않으면서** 해당 건축물에 **매년 약 1,200만원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**으로 **집행**하여 **예산낭비**		

4	**추가 공사분 설계 미반영 등 준공업무 부적정**	**훈계**
ㅇㅇ ㅇㅇ시 체육지원과 ㅇㅇㅇ(시설6급)은 'ㅇㅇ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('19.8월 ~ '20.7월, 1,288백만원) **추가 공사분**에 대하여 **시공업체에서 실정보고를 누락**한 것은 **시공사 귀책 사유**라며 **설계반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준공처리**		